

## 「2010년 규제개혁 주요 추진과제 요약」

### □ 추진과제

#### 가. 방송분야

- 금지되었던 기부금품 광고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전후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오는 광고를 허용(「방통심의위 규칙」 개정)
- 어린이·청소년 주시청 시간대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 편성한 경우 의무편성비율 산정시 가점 부여(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개정)
- 누적손실로 인해 재정이 취약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방송발전기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(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」 제정)

※ 방송통신발전기본법(안)은 국회 문방위 계류 중

- 방송발전기금 부과 결정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(「방송법시행령」 개정)
- 중계유선사업자의 시설변경에 대해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실제 수요가 거의 없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제도 폐지(「방송법」 개정)

#### 나. 통신분야

-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 도입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조건, 절차, 방법, 대가 등의 세부 기준 마련(고시제정)
-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전기공사 등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한 과태료 기준 완화 및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(「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」 개정)
-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만이 수행하는 것을 정보통신기술자도 할 수 있도록 추진(「정보통신공사법」 개정)

- 기간통신사업자 양수·합병 등의 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을 서면 외에도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도 허용(「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」 개정)

#### 다. 전파분야

- 방송통신기기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(4개→2개) 제조사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인정 범위(적합등록 대상)도 확대(「전파법시행령」 개정)

※ 인증유형 : 형식승인·형식검정·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⇒ 적합인증 및 등록

- DTV 난시청 해소를 위해 허가없이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설치를 허용 (「무선설비규칙」 개정)
-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출력 범위를 1급 기사는 500W를 1kW 이하까지, 2급기사는 100W를 200W 이하까지 상향 (「전파법시행령」 개정)

#### □ 추진일정

- (법률 개정, 5건) 상반기 개정안 마련 → 7월 법제처 심사 → 9월 국회 제출
- (시행령 개정)
  - 법률 개정이 우선 필요한 과제(5건) : 6월까지 개정안 마련 → 9월 법제처 심사 → 12월까지 완료
  - 법률 개정과 상관없는 과제(6건) : 2월 중 개정안 마련 → 4월 법제처 심사 → 6월까지 완료
- (행정규칙 개정, 12건)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

붙임 :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(안)